

인증심사 세부기준

□ 기본요건 분야

심 사 항 목	심 사 기 준
① 용기보관실 면적 (허가관청 인정기준 이상 또는 판매물량 연동)	○ 용기보관실 면적 19㎡이상 및 허가관청 인정기준 이상 확보 ○ 용기보관실 면적 19㎡미만일 경우 판매물량 연동에 따른 면적이상 확보 (단, 판매물량 연동 시 '96. 3. 11이전에 허가를 받은 판매업소의 용기 보관실 면적은 최소 12㎡이상 이어야함) • 판매물량에 따른 용기보관실 면적 산출식 $S = \{0.4805 \times C\} \times \{1 - (V/2)\}$ [S : 용기보관실 면적(㎡), C : 월 판매량(톤), V : 체적공급비율(%)/100(체적공급비율(V)이 60%미만인 경우 0으로 적용)] ※ 판매량은 “거래상황기록부” 보고 물량을 적용 한다. (최근 1년간)
② 사무실 면적	○ 9㎡이상 확보 ○ 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이상 확보
③ 가스전용운반자동차 (사업자명의로 확보)	○ 판매사업 허가증에 표기된 대표자 명의로 가스전용운반자동차 (별크로리 포함) 확보 • 자동차 등록증과 판매사업 허가증의 대표자 비교 ㉠ “용기전용운반자동차” 판매물량과 연동 보유(용기 판매물량 기준) • 체적거래비율80%이상 : 50톤이하-1대, 50톤초과-2대 • 체적거래비율80%미만 : 20톤이하 -1대, 50톤이하-2대, 50톤초과-3대 ㉡ “별크로리” 1대 이상 확보 (용기+별크로리 허가인 경우에 한함)
④ 주차장면적 (10㎡, 11.5㎡이상)	○ 가스전용운반차량 주차면적 법적기준이상 확보 • 법적기준 : '06. 5. 3이전 허가업소 → 10㎡이상 '06. 5. 3이후 허가업소 → 11.5㎡이상
⑤ 사업소 소유여부 (사업소 본인소유)	○ 사업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사업자 본인소유 또는 임대기간 1년 이상 • 임대기간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1년 이상 임대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포함 ※ 배우자 명의인 경우 인정 (가족관계증명서 확인)
⑥ 경계표지 (용기보관실 및 가스전용운반 자동차에 경계 표지부착)	○ 용기보관실 : 경계표지(화기엄금, LPG저장소 등) ○ 가스전용운반자동차 : 삼각기 부착, 경계표지(차량 앞·뒤)
⑦ 긴급조치 장비 비치	○ 자기압력기록계, 검지기 등 긴급조치 장비 보유

심 사 항 목	심 사 기 준
⑧ 안전관리책임자 상주근무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	○ 안전관리책임자의 사업소 상주 근무 ○ 비상연락망체계 제시
⑨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	○ 용기 판매 (용기 판매물량 기준) • 체적거래 비율이 80%이상 : 50톤이하-1명, 50톤초과-2명 • 체적거래 비율이 80%미만 : 20톤이하-1명, 50톤이하-2명, 50톤초과-3명 ○ 용기+벌크로리 판매 • 용기 판매에 따른 종업원 수 + 벌크로리 운반자 1명 이상 ○ 용기 운반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실제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, 대표자를 위에 따른 종업원 고용 수에 포함할 수 있다. ○ 종업원 적정 고용 여부 확인 시, 실제 운반·판매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종업원만 인정(전담 사무직 제외) • 운반자동차 운전자·배달원 특별교육 이상 이수자
⑩ 최근 3년간 공급자과실로 인한 LP가스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업소	○ 공급자 과실로 인한 LP가스사고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함
⑪ 행정처분	○ 신규인증 대상은 최근 1년 간 과태료, 과징금, 벌금 등 처분 실적이 없어야 함 ○ 재심사 대상은 본 지침 제20조제1항제6호(인증취소)에 따름
⑫ 보험가입 여부	○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모두 가입해야 함
⑬ 정기검사(자율검사 포함) 합격	○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체는 최근 1년간 정기검사(자율검사) 결과 모두 합격을 받아야 함 ○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체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6에 따른 시설·기술 기준에 적합해야 함
⑭ 안전관리규정 확인·평가	○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체는 최근 1년간 안전관리규정확인 결과 모두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함 ○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체는 안전관리규정 확인·평가에 준하여 평가를 받고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함 ※ 단, 인증심사 세부기준과 동일한 평가항목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
⑮ 전년도 1년간 안전관리 종합평가 700점이상	○ 안전관리종합평가결과 700점 이상을 받아야 함 • “용기+벌크로리”판매사업자로서 용기가스소비자 공급이 없는 (안전관리종합평가 비대상) 경우, 판정 제외
⑯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	○ 전체 공급업소 관리, 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 내역 관리, 공급계약 현황 관리 등이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활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함.(단순 파일관리는 제외)

□ 판매사업운영 분야

심 사 항 목	심 사 기 준		총 배 점 (400점)	평가방법
	평가기준	평가 배점		
1. 소비자현황 전산관리	○ 전산관리 <u>95%이상</u>	<u>75점</u>	<u>75점</u>	* 전산입력 수/ 총 공급업소 수
	○ 전산관리 <u>85%이상</u>	<u>60점</u>		
	○ 전산관리 <u>75%이상</u>	<u>45점</u>		
	○ 전산관리 <u>65%이상</u>	<u>30점</u>		
	○ 전산관리 <u>65%미만</u>	<u>15점</u>		
2. (안전)공급계약 체결율	○ 체결율 100%	50점	50점	* 계약체결업소 수 / 총 공급업소 수 ※ 소형저장탱크 공급사업소 포함
	○ 체결율 90%이상	40점		
	○ 체결율 80%이상	30점		
	○ 체결율 70%이상	20점		
	○ 체결율 70%미만	0점		
3. 용기상호표시율	○ 표시율 100%	50점	50점	* 상호표시용기 수/ 총 확인용기 수 * 현장확인 * 소형저장탱크 시설인 경우, 경계표지(LPG저장소, 화기 엄금, 용무외출입금지) 및 긴급연락처(공급자명칭, 주소, 전화번호) 표시 확인
	○ 표시율 90%이상	40점		
	○ 표시율 80%이상	30점		
	○ 표시율 70%이상	20점		
	○ 표시율 70%미만	0점		
4. 가스보일러 설치현황 관리	○ 전산관리 95%이상	25점	25점	* 설치현황 전산관리 업소 수/총 보일러설치 업소 수 (보일러 공급이 없을 경우 제외점수 적용)
	○ 전산관리 85%이상	<u>20점</u>		
	○ 전산관리 75%이상	<u>15점</u>		
	○ 전산관리 <u>65%이상</u>	<u>10점</u>		
	○ <u>전산관리 65%미만</u>	<u>5점</u>		
5. (안전)공급계약서 현황관리	○ 전산관리 <u>95%이상</u>	<u>50점</u>	<u>50점</u>	* 총 계약현황관리 업소 수/ 총 공급업소 수 ※ 소형저장탱크 공급사업소 포함
	○ 전산관리 <u>85%이상</u>	<u>40점</u>		
	○ 전산관리 <u>75%이상</u>	<u>30점</u>		
	○ 전산관리 <u>65%이상</u>	<u>20점</u>		
	○ 전산관리 <u>65%미만</u>	<u>10점</u>		

심 사 항 목	심 사 기 준		총 배점 (400점)	평가방법
	평가기준	평가 배점		
6. 소비설비안전점검 현황관리	☐ 전산관리 <u>95%이상</u> ☐ 전산관리 <u>85%이상</u> ☐ 전산관리 <u>75%이상</u> ☐ 전산관리 <u>65%이상</u> ☐ 전산관리 <u>65%미만</u>	<u>75점</u> <u>60점</u> <u>45점</u> <u>30점</u> <u>15점</u>	<u>75점</u>	* 전산관리 업소 수/ 안전점검 수 * 소형저장탱크 공급사업소 포함
7. 안전공급계약체결 확인증 부착 여부	☐ 체결 인증 100% 부착 90%이상 부착 80%이상 부착 70%이상 부착 70%미만 부착	50점 40점 30점 20점 0점	50점	* 수요자시설 현장확인 (10개소) * 소형저장탱크 시설의 경우, 공급자 자체제작 스티커 부착시 인정
8. 판매사업소의 보관실도색, 보관실 정리정돈	☐ 보관실 도색 ☐ 보관실 정리정돈	10점 10점	20점	* 현장확인 (미흡 할 경우 각 항목 0점처리)
9. 지자체, 공사 주관 간담회 및 캠페인 등 참여 여부	☐ 1회/년 이상 ☐ 1년 내 미참여	5점 0점	5점	* 관련서류 확인 (최근 1년간 간담회 등 참석 여부) * 지자체 및 공사에서 주관하는 안전관리 사업 참여 시 인정
10. 가스안전 보안관 활동, 표창수상	☐ 가스안전보안관 활동 ☐ 표창수상 (장관·사장이상) ☐ 표창수상(자치단체)	10점 10점 10점	30점 (가점)	* 관련서류 확인 (표창수상은 가스관련 분야의 최근 3년간만 해당)
11.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제1종 또는 제2종 등록 여부	☐ 등록	10점	10점 (가점)	* 관련서류 확인
12. 종업원 추가고용 여부	☐ 추가고용 있음	10점	10점 (가점)	* 가스전용운반자동차 수량 대비 종업원 고용 인원 비교 * 종업원수-운반자동차수 (벌크로리 포함) = 추가 고용 인원수
13. 모바일 시스템 활용 여부	☐ 모바일 시스템 활용	10점	10점 (가점)	*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시스템 사용 확인 (단순 모바일 관리가 아닌 전용 앱 등 사용 시 인정)

※ 주력분야를 가스시설공사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등록(대표자 명의, 공동대표, 배우자명의)
단,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시·군·구에 주력분야를 가스시설공사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등록한 자
중 공동화^주 등으로 시공업이 분리되어 당해 사업자의 지분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
본다.(※ 주) : “공동화”란 여러개의 판매업소가 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.)

□ 공급자의무준수 분야

심사항목	심사기준		총 배점 (600점)	평가방법
	평가기준	평가배점		
1. 체적거래 비율	○ 체적거래 비율 100%	100점	100점	* 체적거래 업소 수 / 체적공급대상 업소 수
	○ 체적거래 비율 90%이상	80점		
	○ 체적거래 비율 80%이상	60점		
	○ 체적거래 비율 70%이상	40점		
	○ 체적거래 비율 70%미만	0점		
2. 공급시설 금속배관화율	○ 금속배관화율 100%	50점	50점	* 배관설치 시설 수 / 총 현장확인 수 * <u>수요자시설 현장확인 (10개소)</u>
	○ 금속배관화율 90%이상	40점		
	○ 금속배관화율 80%이상	30점		
	○ 금속배관화율 70%이상	20점		
	○ 금속배관화율 70%미만	0점		
3. 소비설비 안전점검 실시율	○ 안전점검 실시율 100%	<u>150점</u>	<u>150점</u>	* 안전점검 실시업소 수 / 총 공급업소 수
	○ 안전점검 실시율 90%이상	<u>120점</u>		
	○ 안전점검 실시율 80%이상	<u>90점</u>		
	○ 안전점검 실시율 70%이상	<u>60점</u>		
	○ 안전점검 실시율 70%미만	<u>0점</u>		
4. 최근 1년간 미검사시설 가스공급여부	○ 공급없음	100점	100점	* 심사기준일 대비 (공사전산자료 확인)
	○ 1개소 공급	80점		
	○ 2개소 공급	60점		
	○ 3개소 공급	40점		
	○ 4개소 이상공급	0점		
5. 최근 1년간 부적합시설 가스공급여부	○ 공급없음	100점	100점	* 심사기준일 대비 (공사전산자료 확인) * <u>수요자시설 현장확인 (10개소)</u>
	○ 1개소 공급	80점		
	○ 2개소 공급	60점		
	○ 3개소 공급	40점		
	○ 4개소 이상공급	0점		
6.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율	○ 점검 총괄표 제출율 100%	50점	50점	* 월별 제출서류 확인(필요시 행정관청 확인)
	○ 점검 총괄표 제출율 90%이상	40점		
	○ 점검 총괄표 제출율 80%이상	30점		
	○ 점검 총괄표 제출율 70%이상	20점		
	○ 점검 총괄표 제출율 70%미만	0점		
7. 안전계도물 제작·배포 여부	<u>○ 100% 배포</u>	<u>50점</u>	<u>50점</u>	* <u>수요자시설 현장확인 (10개소)</u> * <u>문자, 메신저 등 온라인을 활용한 계도물 배포 인정</u>
	<u>○ 90%이상 배포</u>	<u>40점</u>		
	<u>○ 80%이상 배포</u>	<u>30점</u>		
	<u>○ 70%이상 배포</u>	<u>20점</u>		
	<u>○ 70%미만 배포</u>	<u>0점</u>		

주) 1. 실제배점 = 총 배점(1000점) - 제외점수

2. 최종심사점수 = [(총 평가점수 ÷ 실제배점) × 1000] + 가점

※ 단, 평가점수는 1000점을 초과할 수 없다.